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1일, 신성범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사회)

제1차 전체회의(2024.7.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사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3.)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17회 국회(임사회)

제3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성범의원)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

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는 「청소년 보호법」등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 정지, 일부 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2월(1차 위반), 영업정지 3월(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3차 위반)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폭행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여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두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 연령 확인 과정에서 위·변조 또는 도용한 증표 제시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욕장 영업자도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확인 의무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여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었음.

[붙임]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개정안과 같이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욕장업(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24시간 영업)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바 연령 확인 과정에서 역시 신분증 위·변조 등 고의적 법 위반 유발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욕장 영업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수정주요내용

가. 제4조의 조 제목을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에서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수정하고, 목욕장업 중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위생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출입시간 준수 사항’으로 분리하여 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4조 제목 및 제2항 각 호의 신설 등).

나. 청소년 출입시간의 준수를 위한 나이 확인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나이에 대한 확인 의무가 전제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각 호 신설 등).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제목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기준 등에 관한”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2호 중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사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안 부칙 제2조 중 “「청소년 보호법」”을 “이 법 또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u>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u>) ① (생략)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u>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u><후단 신설></u>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u>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u> <u><신설></u> <u><신설></u>	제4조 (현행과 같음)	제4조(<u>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u>)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각 호</u> ----- ----- <u>. <후단 삭제></u> 1. ----- ----- ----- ----- ----- ----- <u>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2. ----- ----- -----<u>다음 각 목</u> <u>의</u> ----- <u>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u>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
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
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6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
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
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
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
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
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 8. (생략)

<신 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
의 폐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제8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공중위
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
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
조·변조 또는 도용으

준수사항-----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
-----준수
사항-----

4의2. ~ 8. (생략)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

	<u>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u> <u>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u> <u>는 협박으로 청소년임</u> <u>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u> <u>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u> <u>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u> <u>분을 면제할 수 있다.</u>	----- ----- ----- ----- ----- ----- -----.
	<u><신 설></u>	<u>1. 제1항제4호에 해당하</u> <u>는 경우로서 공중위생</u> <u>영업자가 제4조제2항</u> <u>제2호나목에 따른 영</u> <u>업자의 준수사항을 위</u> <u>반한 경우</u> <u>2. 제1항제8호에 해당하</u> <u>는 경우로서 공중위생</u> <u>영업자가 「청소년 보</u> <u>호법」을 위반한 경우</u>
<u>② ~ ⑤ (생 략)</u>	<u>③ ~ ⑥ (현행 제2항</u> <u>부터 제5항까지와 같</u> <u>음)</u>	<u>③ ~ ⑥ <개정안과 같</u> <u>음></u>
<u>⑥ 시장·군수·구청장</u> <u>은 제5항제3호에 따른</u> <u>봉인을 한 후 봉인을</u> <u>계속할 필요가 없다고</u> <u>인정되는 때와 영업자</u> <u>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u> <u>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u> <u>을 약속하는 때 및 정</u> <u>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u>	<u>⑦ -----</u> <u>----- 제6항제3호-----</u> ----- ----- ----- ----- -----	<u>⑦ <개정안과 같음></u>

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제6항제2호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u>청소년 보호법</u>」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중 “제11조제2항”을 각각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 ----- ----- -이 법 또는 「<u>청소년 보호법</u>」-----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개정안과 같음>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의 제목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기준 등에 관한”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

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2호 중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사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후단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 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중 “제11조제2항”을 각각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등) ① (생 략)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후단 신설>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후 단 삭제> 1. ----- ----- ----- ----- ----- .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 -----다음 각 목의 -----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③ ~ ⑦ (생략)

<신 설>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
영업자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준수
사항-----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① -----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 8. (생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4. -----
-----준수사항-----

4의2. ~ 8.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② ~ ⑤ (생 략)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 제6항제3호----- ----- ----- ----- ----- ----- -----, 제6항제2호----- ----- -----.
---	---